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1서식] <개정 2022. 12. 30.>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] 산재보험 [] 고용보험 ()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(근로자·예술인)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			처리기한 5일					
관 리 번 호		사업장명		전화번호		대표자		산재업종					
사업장소재지								팩스번호					
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산재보험 수정신고				고용보험 수정신고							
		취득일(전입일)		① 연간 보수총액(원)		취득일(전입일)		② 연간 보수총액(원)					
일용근로자 보수총액 (※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)		③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				④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(단기예술인) 보수총액		근로자 종사 사업 예술인 종사 사업					
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(※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)		⑤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(일용 제외)				④-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(실업급여만 적용 제외)							
		⑥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											
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6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자활근로 종사자”라 합니다)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“노조전임자”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⑨란에 작성합니다.													

⑦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(※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)			⑧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(※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)												
구분	업종변경 전 (. . . ~ . . .)	업종변경 후 (. . . ~ . . .)	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장보수총액 (원)			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(명)												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1·제48조의2제8항제2호·제48조의3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위
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.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 / [] 보험사무대행기관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⑨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(※ 수정 대상 근로자만 작성)

관리번호		사업장명		사업장소재지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산재보험 수정신고		고용보험 수정신고	
		취득일(전입일)	⑩ 연간 보수총액(원)	취득일(전입일)	⑪ 연간 보수총액(원)
					실업급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

※ ⑪ 연간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※ '노조전임자'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⑨란에 같이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- 수정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.
 - 산재보험 “근로자 고용신고” 또는 고용보험 “피보험자격 취득신고”가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.
 -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에서 내려 받거나 고용·산재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.
- ① 및 ②란의 “연간 보수총액”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.
 - 근로자의 경우
 -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(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)
 - 휴업·휴직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(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)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,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
 - 예술인의 경우
 -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
- ③ 및 ④란의 “일용근로자 보수총액”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(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예술인)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(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④-1란은 ④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“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(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⑤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”을 적고, ⑥란은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“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”을 적습니다(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.
- ⑦란의 “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”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(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⑧란의 “매월 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”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(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“취득일(전입일)”란에 취득일을 적고,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“취득일(전입일)”란에 전입일을 적기 바랍니다.